여비 규정

제정 2020. 1. 6. (규정 제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임ㆍ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 적용할 여비지급기준과 그 지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원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정액여비로서 지불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행자의 여비) 직원이 원장, 임원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피수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운임) ① 자동차운임은 전체 노정을 정액별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② 문화원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장갈 때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8조(근무지내의 출장) 근무지내의 출장에 있어 업무수행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20,000원,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 10,000원으로 한다.

제9조(국외여비) 국외출장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원장ㆍ임원은 제1호 나목을 적용하고 사무국장ㆍ직원은 라목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여비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